

의안번호	2203433
의 퇴 인	윤종오 의원
회 답 일	2024. 11. 11.
추계번호	24B336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시행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41억 2,500만원(연평균 28억 2,4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화물 자동차 안전 운임제 재시행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안 제5조의9)	156	159	162	166	169	812	162
	위탁사업비(용역) (안 제5조의15 등)	1,014	1,034	1,055	1,076	1,098	5,277	1,05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안 제5조의14)	91	93	95	97	99	475	9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구축 등 (안 제5조의14)	1,306	0	206	210	214	1,936	38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 품목 확대(안 제5조의11)		1,125	1,125	1,125	1,125	1,125	5,625	1,125
합계		3,692	2,411	2,643	2,674	2,705	14,125	2,824

주: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전인 2021년 운영비 집행 사례 및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 시스템 신규 구축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 기존 안전운임제 운영 외에 개정안에 따라 추가된 사항을 기존 안전운임제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1.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등 안전운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한 부대조항(이하 “안전운임 부대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등의 공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종류별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차량 종류별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및 안전운임 부대조항을 공표하여야 함.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 종류별 운송품목의 수를 전년도 보다 확대하여야 함(제2항)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및 환적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세부유형이 일반카고트럭류, 냉장·냉동자동차류, 내장자동차류, 보냉자동차류, 윙바디(Wing-body)자동차류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 최대적재량이 1톤, 5톤, 12톤, 25톤인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5.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세부유형이 탱크로리류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운송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6.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차종으로 한정한다)로 운송되는 자동차 7.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 간 운송되는 택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종류별 운송품목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 또는 안전운임 부대조항 불이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4	안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신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2022년 말) 전 운영 사례 및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등의 공표) 신설	○	
3	안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	
4	안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신설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시행 후 일몰¹⁾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다시 시행하면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 품목을 확대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설치·운영,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 등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운영 및 안전운임 공표 품목 확대를 위한 조사·분석 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본 추계는 2022년 일몰 전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운영했던 사례 및 안전운임신고센터 신규 시스템 구축 필요 등 국토교통부의 의견, 기존에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개정안의 추가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²⁾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안 제5조의9, 안 제5조의14, 안 제5조의15 신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던 2020~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집행 예산은 매년 11억원 수준임

1)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및 제5조의8 중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관한 부분, 제5조의5부터 제5조의7까지, 제67조제1호의2 및 제70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4. 1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	2.5	5.1	3.6	2.5	2.1	2.0	2.0	2.0	2.0

(단위: %)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2022년도에 일몰되어 2023년도 적용 안전운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위탁사업비(용역) 및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비 예산이 감소하는 등 2022년은 집행액이 적었음

[표 2] 과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 경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위원회 운영	160	137	90
위탁사업비(용역)	900	890	810
신고센터 운영	80	80	62
합계	1,140	1,107	962

자료: 국토교통부

- 2021년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컨테이너, 시멘트 등 2개 품목 안전운임위원회와 철강재, 카고 등 2개 품목 안전운송원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은 본위원회,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 총 80명(전원 민간위원)을 두었으며, 회의는 총 55회 개최하였음

[표 3] 20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단위: 명)

위원회 구성									
안전운임(컨테이너·시멘트 품목)					안전운송원가(철강재·카고 품목)				
본위	전문위		운영위		본위	전문위		운영위	
	컨테이너	시멘트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카고	철강재	카고
13	11	8	4	4	13	8	11	4	4

자료: 국토교통부

[표 4] 20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개최 현황

회의 개최(회)	회의실(장소)	임차비용(백만원)
55	서울역 회의실, 삼경교육센터(서울) 등	7

자료: 국토교통부

- 위탁사업비(용역)는 ①운송비용 조사, ②공적자료 분석, ③원가·운임 산정 및 검증 등에 집행되었고, 신고센터 운영비는 ④시스템 운영, ⑤위탁운영, ⑥제도 홍보 등에 집행되었음
 - ①(운송비용 조사) 안전운임(컨테이너, 시멘트) 및 안전운송원가(일반형, 철강재) 품목 대상 차주·운수사 대면 면접조사* 및 표준원가 조사** 수행
 - * 화물차주 및 운수사의 직접적인 화물운송 활동(운송횟수, 운행거리, 운행시간 등) 및 화물운송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활동(차량구입, 정비, 주차, 세무신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
 - ** 화물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단가 조사로 객관적 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차주·운수사가 아닌 정비소, 세차장, 세무사업소 등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금액 조사
 - ②(공적자료 분석)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운송원가 산정을 위해 확보 가능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차량구입금액, 운행거리, 연비 등 주요 운송원가 산출 구성요소 분석
 - * 예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가보조금 시스템,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등
 - ③(원가·운임 산정 및 검증) 차주·운수사 면접조사, 표준원가 조사, 공적자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을 산정하고 회계적 분석을 통한 분석 결과의 타당성 검증 수행
 - ④(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운임신고센터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안전운임 관련 데이터 수집, 가공, 통계분석 등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운영 및 관리
 - ⑤(위탁운영) 안전운임 위반 신고접수, 관할관청 통보, 신고 처리 상황 관리, 콜센터 통한 시스템 안내 등 위탁운영
 - ⑥(제도 홍보) 안전운임제도 취지 및 이해 향상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운영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인프라를 신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과거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운영을 목적으로 개설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 시스템의 운영 인프라(서버, 상용S/W 등)를 같이 사용하여 운영하였고, 일시적 민원 집중 발생 시 시스템 인프라(서버 트래픽) 과부하로 두 시스템 모두 서버다운 등으로 대국민 업무 불편을 초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에 공공 클라우드 기반(IaaS방식)의 안전운임신고센터

전용 시스템 인프라 신규 구축 및 현재 추진중인 화물운송행정 통합관리시스템과 '26년 이후 상호 데이터를 연동하여 업무에 효율성 향상하기 위해 시스템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표 5]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구축 등 단가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금액
시스템 구축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인프라	상용SW(암복호화 툴, 공인인증 툴 등)	90
		HW(WEB 서버, WAS 서버, DB 서버 등)	93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 시스템 개발	SW개발비 등	52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기능 구축	SW개발비 등	363
	지입제 피해 신고 시스템 구축	SW개발비 등	528
	화물자동차 공정계약 신고센터 시스템 감리	감리비 등	180
	소계		1,306
유지 관리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운영	사업관리, 시스템 정기점검, 데이터백업 등	72
	지입제 피해 신고 시스템 운영	품질 및 사업관리 등	77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데이터 이관	데이터 백업 및 변환, 신규DB 이관 등	57
	소계		206
합계			1,512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 제5조의9제1항제2호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등 안전운송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대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몰된 안전운임제에서도 안전운임의 세부사항을 정한 부대조항을 포함하여 운영하였고, 개정안은 부대조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명시하는 성격으로 해당 조항 신설로 인해 일몰된 안전운임제 시행 당시의 안전운임위원회의 운영과 비교하여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임

- 개정안 시행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재시행될 경우, 과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전의 제도 운영 사례와 유사하게 운영한다고 가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의견대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시스템 인프라를 신규 구축한다고 가정하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5억원(연평균 17억원)으로 추계
 - － 위원회 운영, 위탁사업비, 신고센터 운영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과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2년차인 2021년의 제도 운영 사례를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시스템 인프라 신규 구축은 추계기간 중 첫해인 2025년에 완료하고 2026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5년 이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1년)을 거쳐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³⁾하되,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

[표 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재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	156	159	162	166	169	812	162
위탁사업비(용역)	1,014	1,034	1,055	1,076	1,098	5,277	1,05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	91	93	95	97	99	475	9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구축 등	1,306	0	206	210	214	1,936	387
합계	2,567	1,286	1,518	1,549	1,580	8,500	1,700

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전인 2021년 운영비 집행 사례 및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신규 구축 자료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HW 및 SW 도입 후 1년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공표 품목4) 추가(안 제5조의11 신설)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할 품목을 기존의 컨테이너, 시멘트 등 2개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및 시멘트의 원료, 철강재,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품목, 위험물·유해화학물질·지정폐기물, 자동차, 택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 등으로 확대하고 있어, 안전운임 산정 등을 위한 조사·분석에 필요한 용역비 증가가 예상됨
 - 개정안 제1항은 안전운송원가 공표 품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개정안 제2항은 안전운임 공표 품목으로 7개 품목을 나열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추가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알 수 없으므로, 안전운송원가 공표 품목은 현행(일몰)과 동일하게 2개가 유지되고 안전운임 품목은 개정안에서 나열한 7개 품목이라고 가정함
 - 또한, 개정안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차량 종류별 운송품목의 수를 전년도보다 확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확대된 품목 수만큼 운임 산정 등을 위한 조사·분석에 필요한 용역비가 증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매년 전년도보다 운송품목의 수가 어느 정도 확대될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표 7]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 공표 품목(안 제5조의11 관련)

구분	현행(일몰)	개정안
안전운송원가 공표 품목 (안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 - 대통령령: 철강재, 화물자동차로 운송할 수 있는 모든 품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 - 기존의 철강재, 화물자동차 운송 품목이 아래 안전운임 공표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을 알 수 없으나, 본 추계에서는 품목의 개수가 현행과 동일하게 2개로 유지된다고 가정함

-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운송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공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철강재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로 운송할 수 있는 모든 품목

구분	현행(일몰)	개정안
안전운임 공표 품목 (안 제2항)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u>컨테이너</u>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u>시멘트</u>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및 환적 <u>컨테이너</u>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u>시멘트 및 시멘트 원료</u>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u>철강재</u>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세부유형이 일반카고트럭류, 냉장·냉동자동차류, 내장자동차류, 보냉자동차류, 윙바디(Wing-body)자동차류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 최대적재량이 1톤, 5톤, 12톤, 25톤인 <u>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u> 5.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자동차의 세부유형이 탱크로리류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운송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위험물</u>,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유해화학물질</u>,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u>지정폐기물</u> 6.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차종으로 한정한다)로 운송되는 <u>자동차</u> 7.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u>택배서비스 사업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물류센터 간 운송되는 택배</u>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종류별 운송품목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 공표 품목인 컨테이너, 시멘트와 안전운송원가 공표 품목인 철강, 카고의 조사·분석 비용으로 매년 9억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어, 1개 품목의 조사·분석 단가는 2억 2,500만원 가량임(9억원÷4품목)
- 개정안에 따라 안전운송원가 공표 품목 및 안전운임 공표 품목을 현행(일

물) 4개에서 9개로 5개 추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6억 2,500만원(연평균 11억 2,500만원)으로 추계

- 현행(일몰) 4개 품목 조사·분석 비용은 앞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 중 위탁 사업비(용역)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는 추가되는 5개 항목에 대한 비용
- 2억 2,500만원 × 5개 = 11억 2,500만원

[표 8]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품목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품목 확대	1,125	1,125	1,125	1,125	1,125	5,625	1,125

주: 안전운임 공표 품목과 안전운송원가 공표 품목의 조사·분석 단가가 동일하고, 추계기간 중 단가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품목별 조사·분석 비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전인 2021년 운영비 집행 사례 및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시스템 신규 구축 자료 등을 바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 기존 안전운임제 운영 외에 개정안에 따라 추가된 사항을 기존 안전운임제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